

입법예고

공 급 망 위 험 대 응 을 위 한
필 수 농 자 재 등 지 원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제 정 안

농 립 축 산 식 품 부
(농 업 정 책 과)

1. 의결주문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급망 위험에 따른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상승으로 인한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지속가능한 생산활동 보장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1201호, 2025. 12.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필수농자재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을 정함(안 제4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해당없음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대응지침의 작성·운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침(이하 “위기대응지침”이라 한다)을 작성·운용하기 위하여 공급망 위험으로 인한 국내 필수농자재등 가격 상승 위험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기대응지침의 수정·보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공급망 위험에 따른 원자재 가격, 환율 등 변동으로 인한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변동률
2. 위기단계의 설정 기준 및 단계별 대응조치의 필수농자재등의 가격 안정에 대한 효과성 여부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농촌진흥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2. 농림축산식품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1명
3. 농업 생산자단체 대표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명
4.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 소속 임원 중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1명
5. 농업 분야 공급망 위험 및 필수농자재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필수농자재등 제조·판매업자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 조사

2.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5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영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조 관련)

1. 일반 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요청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19조 제1항 제1호	50 만원	80 만원	100 만원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 출입·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법 제19조 제1항 제2호	50 만원	80 만원	100 만원